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11. . (제 회)	

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11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외무역법('22.6.10)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” 등(안 제59조의2)

- 1)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임을 고려하여, 현행 1억원 이상의 과징금납부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에 대해,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자나, 1천만원 이상의 납부대상자에게도 허용토록 함

나. “과징금 부과금액의 경감요건 완화”(안 제60조)

- 1)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임을 고려하여, 현행 경감요건에 사업규모(중소기업 여부)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함

다. “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”(안 제66조)

- 1)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많아짐에 따라, 이를 고려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므로,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발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생산물품에

대해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0. 6. ~ 11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2의 제목 “(서류검사)”를 “(자료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류”를 “자료”로, “서류를”을 “자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원산지”를 “문서화·전산화된 장부,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으로서 원산지”로, “서류”를 “자료”로 한다.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억원 이상”을 “1천만원 이상 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2항 본문 중 “횟수”를 “횟수, 사업규모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)”로 한다.

제66조의 제목 “(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”을 “(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따른 수출 물품의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”를 “상대”로, “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”을 “원산지판정기준 또는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원산지 판정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”를 “원산지증명서”로, “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”를 “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”로 하

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출 물품의 가격·수량”을 “가격·수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출물품의 원산지”를 “원산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후 수출 물품의”를 “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1년”을 “1년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”를 “협정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5항 중 “제4항까지에서”를 “제4항까지”로, “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”를 “원산지증명서”로 한다.

제90조 중 “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”를 “원산지증명서”로 한다.

제91조제4항제4호의2 중 “이 영 제59조의2”를 “제59조의2”로, “권한”을 “권한,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자 중 공표 대상자에 대해 공표하는 권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서류검사) 법 제33조제 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<u>서류</u> ”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<u>서류</u> 를 말한다.	제57조의2(자료조사) ----- ----- ---- <u>자료</u> ----- ---- <u>자료를</u>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<u>원산지</u> 의 표시에 대 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서류</u>	3. ----- <u>문서화·전산화된 장 부,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으로서 원산지</u> ----- ----- <u>자료</u>
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납부)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 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<u>1억원 이상</u> 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	제5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장 및 분할납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천만원 이상</u> <u>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「중 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
1. ~ 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,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.

제66조(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.

②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횟수, 사업규모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) -----
-----.

-----.

제66조(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) ① -----
-- 따른 -----

상대 ----- 원산지판정기준 또는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원산지 판정기준 -----
-----.

② 원산지증명서 -----

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수출 물품의 가격·수량 등에 관한 서류
3.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·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.

-----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-----

1. (현행과 같음)
2. 가격·수량 -----

3. ----- 원산지-----

③-----

----- 후 -----

-----.

④----- 1년 이내-----.

----- 협정-----

-----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0조(수수료)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. 다만,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4. (생략)

4의2.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,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

⑤----- 제4항까지 -----
----- 원산지증명서-----

-----.

제90조(수수료) -----
원산지증명서-----

-----.

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.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-----
----- 제59조의2-----

----- 권한, 제60조
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가중

